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1. 제작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경 자동차	가	75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나	76 이하	100 이하	
승 용 자동차		75 이하	100 이하	
소 형 화 물 자 동 차		77 이하	100 이하	
중 량 자 동 차	원동기출력 200마력 초과	82 이하	105 이하	
	원동기출력 200마력 이하	81 이하	103 이하	
이 른 자 동 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작 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허용기준을 77dB(A)

이하로 한다.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경자동차	가	74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나	76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 1		74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2		76 이하		
	승용 3		77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80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76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77 이하		
	화물3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9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79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승용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9인승의 자동차는 승용2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을 적용한다.
4. 승용1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직접분사식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6. 화물2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3톤 이상 3.5톤 이하의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1dB(A)를 가산하고, 직접분사식 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7.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승용1 및 승용2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작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속주행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 그 허용기준을 77dB(A) 이하로 한다.
8. 가속주행소음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맞는 시험도로에서의 측정 결과에 의한 기준을 말하며,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이 경우 이륜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기준은 다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9.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0년 9월 30일까지 가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가	나		
경자동차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나			76 이하	77 이하		
승용 자동차	승 용 1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승 용 2			76 이하	77 이하		
	승 용 3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승용 4	원동기출력 195 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 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화 물 자동차	화물1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77 이하	78 이하		
	화물 3	원동기출력 97.5 마력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 마력 초과 195마 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마력 초과				
이 룬 자 동 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 하·80cc 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참고

1.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한다.
2. 경자동차 중 "나"는 참고 1.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3. 가속주행소음 중 "나"는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중 "가"는 참고 3. 외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5. 승용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자동차로서 원동기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6. 가속주행소음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7.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이륜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관한 국제표준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소음측정방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나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가	나		
경자동차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나	76 이하	77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6 이하	77 이하		
	중대형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7 이하	78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80cc 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참고: 1. 위 표 중 경자동차의 "가"의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경자동차의 "나"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나"의 규정은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가"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 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마.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가	나		
경자동차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나		76 이하	77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중형		76 이하	77 이하		
	중대형		77 이하	78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195마력 미만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7 이하	78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97.5마력 미만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상 195마력 미만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PMR≤25	73 이하	73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50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 · 80 cc 초과	PMR≤25	73 이하	73 이하	105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50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	PMR≤25	73 이하	73 이하	102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50	77 이하	77 이하		

비고

- 경자동차 중 “가”는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적용하고, “나”는 그 밖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 가속주행소음의 “나”는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적용하고, “가”는 그 밖의 자동차에 적용한다.
-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 PMR(Power to Mass Ratio, 중량대 출력비)은 최고출력을 자동차의 공차상태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않고 물품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가득 채우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량에 75kg을 더한 자동차 중량(kg)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운행자동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배 기 소 음 (dB(A))		경적소음(dB(C))
	대상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모든 자동차
자동차 종류				
경 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승 용 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소 형 화 물 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중 량 자동차		107 이하	105 이하	
이 룰 자동차		110 이하	105 이하	

나.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자동차 종류			
경 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 용 자동차	승 용 1	100 이하	110 이하
	승 용 2	100 이하	110 이하
	승 용 3	100 이하	112 이하
	승 용 4	105 이하	112 이하
화 물 자동차	화 물 1	100 이하	110 이하
	화 물 2	100 이하	110 이하
	화 물 3	105 이하	112 이하
이 룰 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C))
자동차 종류			
경 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 용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화 물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이 룰 자 동 차		105 이하	110 이하

비고

법률 제19150호 소음·진동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 표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